

보상금 지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
제2연평해전 전사자	성명(한자) ()	생년월일	
	등록기준지	당시 주소	
신청인	성명(한자) (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
	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	의	

본인은 「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. 다만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 2.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(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·수령 위임장(이민·입원·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유족	→ 60일 이내	결정 및 통보 국방부장관	→ 60일 이내	지급 국가보훈부장관
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